

12. 모나코(Monaco)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4년(근로자), 1958년(자영자)
- 현행법 : 1944년(장애연금), 1947-1948년(노령연금), 1949년(장애연금), 1962년(노령연금), 1971년(장애연금), 2002년(노령연금)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국가 및 지방정부에 고용된 자를 포함한 근로자
- 특별제도 : 자영자 및 공무원, 병원 소속 직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6.55%.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배우자 수당, 최소퇴직보충수당, 사망수당의 재원이 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 월 € 4,760
- 자영자 : 해당 없음
- 사용자
 - 임금지급 총액의 6.95%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배우자 수당, 최소퇴직보충수당, 사망수당의 재원이 됨.
 - 연간 조정된 임금지급총액의 1.12%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충하는 재원이 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 월 € 4,760
- 정 부 : 없음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근무기간이 60개월 이상, 연간 근무시간 최소 151~173시간 이상(근무년도에 따라 상이)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65세 도달자
 - 유급 병가, 출산, 육아, 입양 휴가 또는 장애, 실업기간이 가입연수로 산정됨

- 퇴직이 필수요건은 아님
- 조기연금
 - 모든 소득활동이 종료된 60세 이상자. 여성은 16세 이전의 3자녀를 8년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55세부터 지급.
 - 가입자는 질병, 산재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어야 함
 - 퇴직 이전에 근무 완전중단 필수; 특정 조건 하에 이후 다시 근무 가능
- 연기연금 : 연금 수급 연기 가능
- 배우자수당 : 가입자가 60점 이상의 연금점수(pension point)를 가지고 있어야 함. 배우자는 가입자와 동거하여야 함.
- 소득조사 : 가구 총 연간 소득(배우자 수당 포함)이 € 26,539.20를 넘지 않아야 함.
- 연금점수 = 월 기준급여에 가입자 월 기준소득을 나눈 점수(월 최대 4점)
- 특수수당 : 가입자가 모나코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연금점수가 35점 이상이어야 함. 모나코 혹은 프랑스 알프스 해안가 거주해야 함
- 해외지급 가능
- 최소퇴직보충수당
 - 가입기간이 450개월 이상이며 연금점수가 775점 이상이어야 함
 - 연금점수 = 월 기준급여에 가입자 월 기준소득을 나눈 점수 (월 최대 4점)
 - 월 기준급여 = € 1,190
 - 해외지급 가능

○ 장애연금

- 60세 미만(모나코,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에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62세 미만)인 자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완전장애)이고, 장애발생 이전 15개월 중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장애발생 이전 3개월 중 근로시간 200시간을 포함하여 장애발생 이전 12개월 중 근로시간이 800시간 이상인 자
- 부분장애 : 66.7% 이상 ~ 100%미만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감액 연금 지급
- 상시간병수당 : 일상생활을 위해 타인의 상시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
- 해외지급 가능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연금 수급권자였거나 사망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간 근무시간 최소 151~173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질병 및 출산휴가를 지급 받은 기간과 장애·실업 기간을 포함한 가입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50세 이상 미망인(자녀 한명을 양육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부양 자녀 한명 이상이 있는 홀아비(근로가 가능한 경우 65세 이상, 불가능한 경우 60세 이상), 사망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위자료를 받고 있는 이혼 상태의 미망인/홀아,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학생/견습이거나 병자일 경우 21세) 대상.
- 홀아비가 자녀 부양을 포기한 경우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거나,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지급 정지 (소득활동이 불가할 경우 60세)
- 배우자는 재혼/타인과 동거 시 연금 지급 중지
- 해외지급 가능
- 사망수당
 - 노령연금 수급자의 생존하는 배우자에게 지급. 생존하는 배우자는 사망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지 않았어야 함. 수급할 생존 배우자의 부재 시에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에게 지급
- 사망일시금
 - 최우선 순위로 배우자, 자녀, 부모로 지급. 사망자가 장애연금 수급자거나 사망 전에 월 120시간 근무한 경우(또는 분기에 200시간). 일시금은 사망자의 생존중인 배우자, 법적/사실상/입양된 자녀, 부모, 그리고 조부모에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연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되는 총 연금점수를 연금점수 당 가치(€18.57)를 곱하여 산정. 연간 연금점수는 개인별 임금을 월 기준소득으로 나누어 산정
 - 연금점수는 월 최대 4점까지 획득가능
 - 월 기준소득은 € 1,190이며, 연금점수가치는 € 18.57임
- 조기연금 :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
- 연기연금 : 정년 도달 후 가입기간 1분기당 1.5%씩 증액(최고 30%까지)
- 배우자 수당
 - 매년 마지막 분기에 지급. 은퇴 당시 연금점수가 360점 이상일 경우 € 1,190 지급. 연금점수가 360점 미만이면 연금점수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 또한, 급여는 매년 연말에 지급됨
- 특별수당 : 연금점수가 360점 이상일 경우 월 € 299 지급; 연금점수가 360점 미만인 경우 연금점수에 따라 감액
- 노령연금은 매월 지급됨
- 급여조정 : 연간 연금점수의 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

- 최소퇴직보충수당 = (총 연금점수 - 775) X 연금점수가치
 - 가입자의 총 연간 소득(최소퇴직보충수당 포함)이 일정 연금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미달할 경우 완전급여가 지급됨
 - 독신 990점, 기혼 1,440점
 - 연금점수가치 : € 18.57
 - 매월 지급
 - 연금점수 가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됨

○ 장애연금

-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가입자의 장애발생 전 60개월간 평균 소득월액의 50%(완전장애) 또는 30%(부분장애) 지급
- 최대 지급액은 완전장애의 경우 € 4,250, 부분장애의 경우 € 2,550
- 상시간병수당 : 장애연금액의 40%
- 매분기 지급
- 급여조정 : 장관 고시에 의해 매년 1월 조정됨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사망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60%를 미망인 (홀아비)에게 지급
 -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에 대한 연금은 사망자가 그 배우자와 같이 살았던 기간에 획득한 사망자의 연금점수에 근거하여 지급
 - 연금점수는 사망자의 월 임금을 월 기준소득으로 나누어 산정; 최대 월 4점 획득 가능
 - 월 기준소득 : € 1,190, 연금점수가치 : € 18.57
- 고아연금
 - 고아 1인당 사망한 가입자에게 지급되었던 연금 또는 지급 예정연금액의 25%. 완전고아는 가입자 연금액의 50%(부모 모두 연금 수급자였더라도 최고한도액은 50%) 지급
 - 합산된 모든 고아연금은 사망자 연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망수당 : 일시금은 사망자의 연간 연금액의 25%, 사망 당시 기준소득의 최대 150%까지 지급
- 사망일시금 : 사망 전 최종 12개월(가입 중 사망) 또는 장애발생 전 최종 60개월(장애연금 수급 중 사망) 동안의 평균 일일 소득의 90배를 사망일시금으로 지급. 최소 € 425, 최대 € 25,500

7. 관리운영기관

- 독립근로자연금고(Independent Employees' Pension Fund, CAR)
 - 정부, 사용자, 근로자의 대표로 구성되었고 근로자의 노령보험제도 운영

- 사회서비스 보상금고(Compensation Fund for Social Services, CCSS)
 - 정부, 사용자, 근로자의 대표로 구성되었고 근로자 장애보험제도와 사망일시금 제도 운영

<2018년 ISSA 자료>